

심사보고서

【남양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】

의안 번호	433
----------	-----

2024. 6. 12.

운영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4. 5. 31. / 김지훈(민) 의원 등 9인
나. 회부일자 : 2024. 5. 31.
다. 상정 및 의결일자 : 2024. 6. 12.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- 남양주시의회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보다 창의적인 행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공무원의 생일이 해당하는 월에 1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남양주시의회 공무원 특별휴가(생일) 1일 부여(제14조 제9항)
- 공무원은 본인의 생일이 속하는 달에 1일의 생일휴가를 받는 규정 신설

3.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이봉규)

- 동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제7조의7 규정에 부합하며, 남양주시의회 공무원들이 정신적, 신체적으로 재충전할 기회를 제공하여 공무원 사기진작과 더불어 긍정적인 조직문화를 형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·답변 요지

- 회의록 참고

5. 토론요지

- 없음

6. 심사결과

- 「원안가결」

7. 소수의견 요지

- 없음